

 <p>거창군 Geochang County</p> <p>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.</p>	<h1 style="font-size: 4em; margin: 0;">공 보</h1> <p style="font-size: 1.5em; margin: 0;">제906호 2023. 4. 5.(수)</p>	
---	--	---

선 결	기관의 장

고 시

거창군 고시 제2023-43호	가북면 어인지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고시	2
거창군 고시 제2023-45호	도로명주소 고시	3
거창군 고시 제2023-46호	도로구간 변경 고시	4

공 고

거창군 공고 제2023-580호	보 상 계 획 공 고	8
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	---

회 램									
----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 행 : 거창군 편 집 : 기획예산담당관 (☎055-940-3043)

※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(<http://www.geochang.go.kr>)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

가북면 어인지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고시

“가북면 어인지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”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사항을 「농어촌정비법」 제58조제3항,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4월 5일

거 창 군 수

1. 사업의 명칭 : 가북면 어인지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
2. 사업의 목적 : 농촌마을 기초생활기반 확충을 통해 살고 싶고, 찾고 싶은 농촌마을 조성
3. 사 업 비 : 540백만원
4. 주요 사업내용
가. 위 치 :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300-5번지 일원
나. 세부사업 내용
- 기초생활기반 : 마을회관 신축, 주차공간 및 버스 회차로 정비
5. 사업시행자 : 거창군수
6. 사업시행기간 : 2022년 ~ 2023년 (2년)
7.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 농촌개발담당으로 문의(☎055-940-8273)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도로명주소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·변경·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. 4. 5.

거창군수

○ 도로명주소 고시대상

- 건물번호 부여 :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계동길 242-93 등 7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고시일	도로명 부여 (변경·폐지)사유	비고
(별 도 열 람)				

○ 도로명주소 사용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·변경·폐지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·변경·폐지는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「도로명주소법」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.
-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(☎055-940-3314)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도로구간 변경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8조(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(도로명 등의 고시 및 고지)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도로구간 변경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4월 5일

거창군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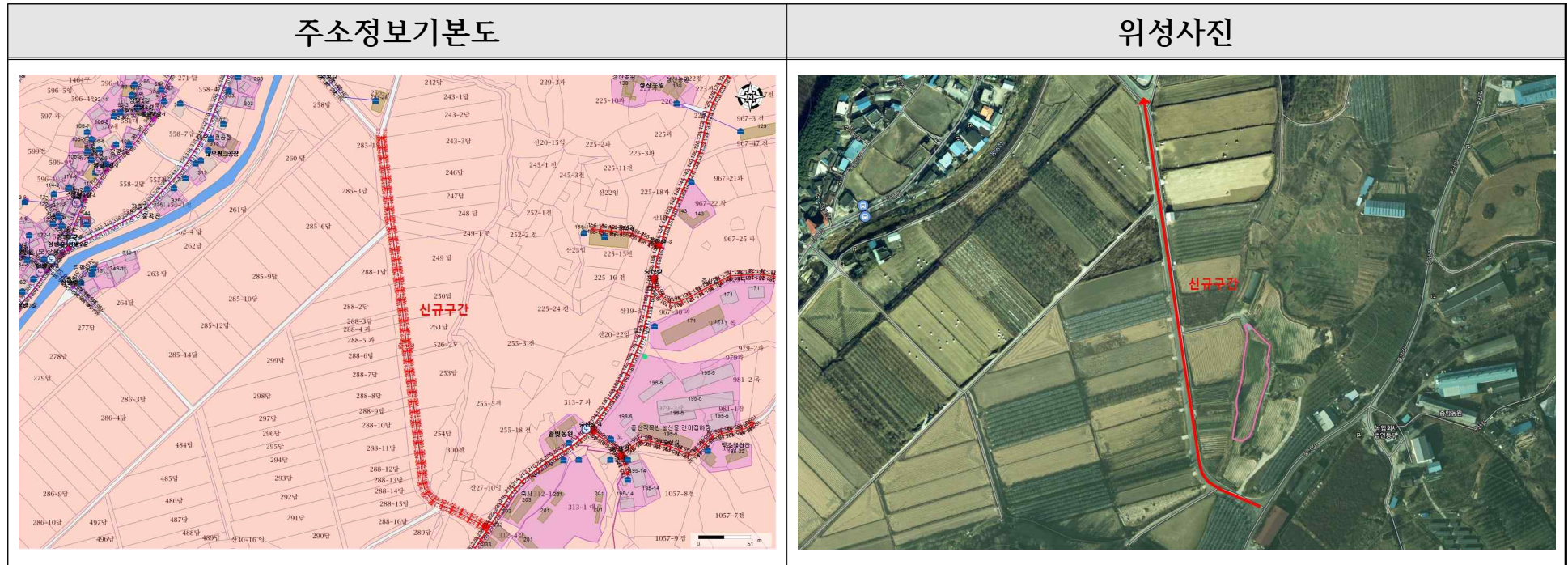
1. 고시일자 : 2023. 4. 5.
2. 고시방법 : 거창군보, 거창군 홈페이지, 게시판
3. 고시내용 :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 / [붙임] 참조
※ 「도로명주소법」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 및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
4. 참고사항
 - 도로구간의 변경·폐지는 「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」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일 2023년 4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.
 -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민원소통과(☎055-940-3313)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도로구간 변경 조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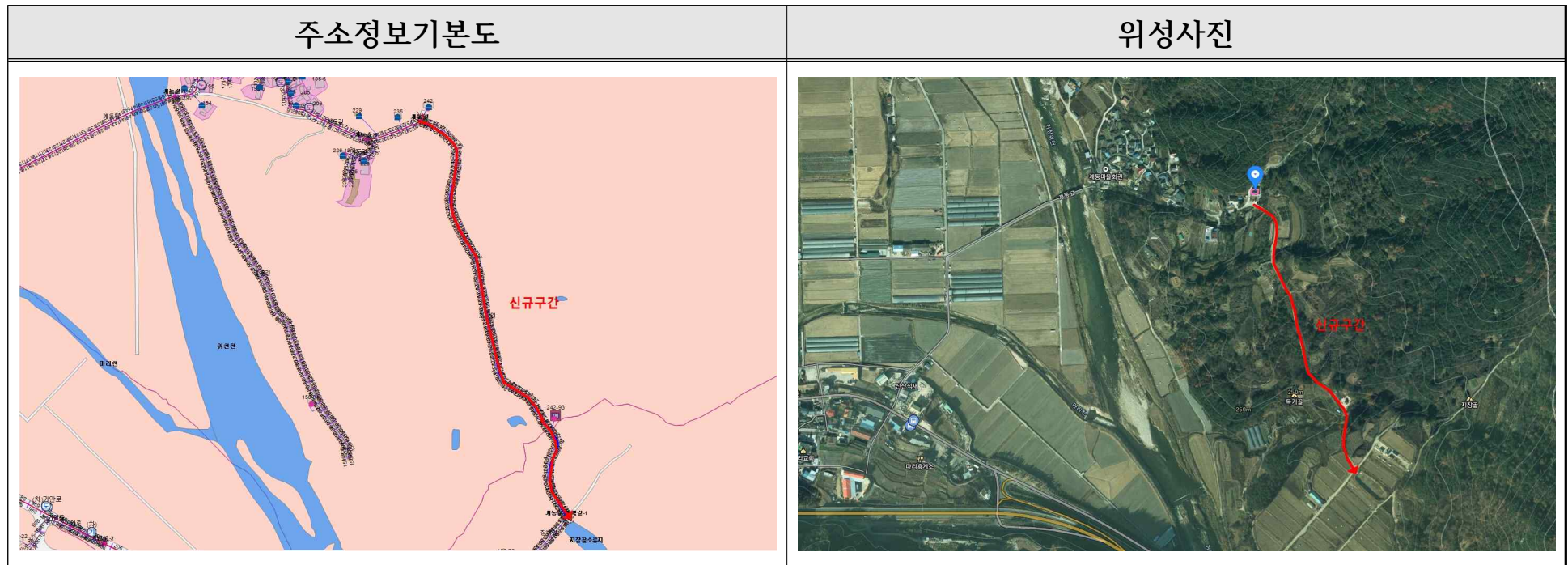
일련 번호	행정 구역	구 분	도로명	도로구간		중양선	건물 번호	사물 주소	도로구간 변경 사유	비 고
				시작지점	끝지점					
1	거창읍	변경 전	장팔3길	거창읍 장팔리 1473 (장팔3길 148)	-	도면참조	0	없음	종속구간 생성	직권
		변경 후	장팔3길	거창읍 장팔리 1473 (장팔3길 148-1)	거창읍 장팔리 805-1 (장팔3길 148-10)	도면참조				

주소정보기본도	위성사진
	

일련 번호	행정 구역	구 분	도로명	도로구간		중양선	건물 번호	사물 주소	도로구간 변경 사유	비 고
				시작지점	끝지점					
2	거창읍	변경 전	중산길	거창읍 장팔리 313-21 (중산길 224)	-	도면참조	0	없음	종속구간 생성	직권
		변경 후	중산길	거창읍 장팔리 313-21 (중산길 224-1)	거창읍 장팔리 301 (중산길 224-86)	도면참조				



일련 번호	행정 구역	구 분	도로명	도로구간		중양선	건물 번호	사물 주소	도로구간 변경 사유	비 고
				시작지점	끝지점					
3	마리면	변경 전	계동길	마리면 영승리 330-3 (계동길 242)	-	도면참조	0	없음	종속구간 생성	직권
		변경 후	계동길	마리면 영승리 330-3 (계동길 242-1)	마리면 영승리 425-6 (계동길 242-118)	도면참조				



보 상 계 획 공 고

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일원에 계획된 “동산마을 농촌공간 정비사업”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출입을 공고하고,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,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상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하여 주시고 보상협의를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. 3. 30.

거 창 군 수

1. 사업개요

- 가. 사 업 명 : 동산마을 농촌공간 정비사업
- 나. 위 치 :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동산마을 일원
- 다. 사 업 량 : 유해시설(폐축사 등) 철거 및 환경정비
- 라. 사 업 기 간 : 2022년 ~ 2026년
- 마. 사업시행청 : 거창군(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)

2. 토지출입내용

- 가. 출입사유 : 토지 및 물건 조사, 측량, 감정평가 등
- 나. 출입토지 :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518번지 등 56필지
- 다. 출입기간 : 2023. 3. 30. ~ 사업 종료시까지

3.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

- 가. 토 지 :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518번지 등 56필지
 - 나. 물 건 : 편입토지 상에 소재한 지상물건 일체
 - 다. 열람내용 : 사업구간 내 편입토지와 지장물건 확인 및 누락 여부 등
- ※ 거창군 홈페이지(<http://www.geochang.go.kr/>) ⇒ 입법/공고/고시)에서 확인가능

4.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

가.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: 2023. 3. 30. ~ 2023. 4. 13. (15일간)

나.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: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 농촌개발담당
(☎ 055-940-8270)

다. 이의신청 및 방법

-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계획 안내문에 첨부된 이의신청서에 내용을 기재하여 열람기간 내 서면 또는 우편으로 제출

5. 보상협의 및 지급시기 : 개별 통지 예정

6. 보상방법 및 절차

가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」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우리군과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함.

나. 보상장소, 보상금액,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 시기에 맞춰 개인별로 통지 예정임.

7. 감정평가업자 선정

가.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거창군이 선정하는 감정평가업자 이외에 토지소유자 및 경상남도지사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각 1인을 추천할 수 있음.

나.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로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음.

8. 기타사항

가. 보상조서 물건내역은 추후 분할측량 및 계획변경, 재조정,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음.

나. 보상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서 및 개별 통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개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주소나 거소 불명 등으로 반송 될 경우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합니다.

이 의 신 청 서

① 사 업 명	동산마을 농촌공간 정비사업		
② 사업장 위치	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일원		
③ 사 업 자	거 창 군 수		
④ 이 의 신 청 제 출 자	성 명		생년월일
	주 소	(전화번호 :)	
⑤ 이 의 신 청 내 용			

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15조에 의하여 토지 및 물건 조서를 열람하고 조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.

2023 년 4 월 일

제 출 자 (서명 또는 인)

거 창 군 수 귀하